



주목할 만한 내용

1. 법인세 (CIT)

- 과학기술기업 인증서를 부여받은 기업에 대한 CIT 인센티브 제도
- 수출품생산에 과잉 수입원자재 처리비용에 대한 CIT
- 미사용 연차수당비용에 대한 CIT

3. 개인소득세 (PIT)

- 베트남에서 근무하러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PIT
- 부동산 증여 위임에 대한 PIT

2. 간접세 (VAT)

- 투자단계에 발생한 VAT에 대한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VAT 환급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 한개의 조정 인보이스가 오류가 있는 여러 전자 인보이스를 수정 불가능함
- 부동산 활동 양도를 위한 VAT 과세 가격 결정
- 통관 후 조사결론에 따른 추가 납부 VAT에 대한 공제신고
-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조정 인보이스

4. 외국인계약자세 (FCWT)

- 자산 청산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 기존 기술 플랫폼상 디지털 유틸리티 사용권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5. 무역 및 관세

- 수출 가공업체 ("EPE")는 일반기업 ("NON-EPE")으로 전환할 때 세금 정책
- 내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 사용 목적 변경에 따라 수출 생산·가공을 위한 수입 원자재 재수출
- 수입품에 대한 로열티비 추가 신고
- 수입 원자재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지만 규정에 세금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 및 연체이자 부과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과학기술기업 인증서를 부여받은 기업에 대한 CIT 인센티브 제도

기업이 과학기술부로 부터 과학기술기업 인증서를 부여받은 경우 제03/2021/TT-BTC호 제2조에 규정된 자격조건에 충족하면, 과학기술기업에 대한 CIT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 과학기술 결과로 형성된 제품의 생산 및 거래로 인한 연간 수익은 회사 총 연간 수익의 최소 30%에 달성해야 함;
- 정보기술분야에서 과학기술 결과로 적용된 서비스에서 창출된 수익은 현행 시장에서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제외한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창출된 수익이어야 한다. 정보기술분야에서 과학기술의 결과를 적용하는 서비스를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는 과학기술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서비스이어야 하는 것이며, 및
- 과학기술 기업은 과세 기간에 과학기술 결과로 형성된 제품의 생산 및 거래에서 창출된 소득을 별도로 계산하여 CIT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기업이 과학기술 결과로 형성된 제품의 생산과 거래로 인해 창출된 수익을 별도로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 CIT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할당해야 한다.

CIT 면제, 감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적용일정은 재무부의 제3/2021/TT-BTC호의 제3.1 & 제3.2조에 규정된다. 구체적으로:

- 과학기술 기업은 04년간 CIT 면제 및 그이후 9년간 CIT 50% 감면을 적용 받는다.
- 과학기술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및 감면기간은 과학기술기업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산한다. 과학기술기업 인증서를 부여 받은 첫연도로 부터 처음 3년간 동안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 면제감면 적용 첫연도는 4년차부터 적용 시작한다.
- 기업이 CIT 면제감면 적용 받는 기간 동안 과학기술 결과로 형성된 제품의 수익이 총 연간 수익의 최소 30%에 달성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년도는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당년도가 과학기술기업의 CIT 인센티브 적용기간에 제외된다

기업이 기타 우대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과학기술기업 인센티브 제외) 적용하는 동안 과학기술기업 인증서를 부여 받은 경우 과학기술기업 인센티브 실제 적용기간은 과학기술기업 인센티브 적용대상 규정기간에서 기타 우대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실제로 적용했던 기간을 뺀 기간으로 정한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8월 26일 제42225/CTHN-TTHT 호 OL)

수출품생산에 과잉 수입원자재 처리비용에 대한 CIT

기업이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생산 과정에 해당 수입 원자재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과잉 원자재에 대한 처리비용이 CIT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9월 6일 제13986/CTBDU-TTHT 호 OL)

미사용 연차수당비용에 대한 CIT

회사가 노동법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비용은 법에 의한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CIT목적으로 공제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연차휴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2019년 11월 20일 제 45/2019/QH14호 노동법의 제 113조에 따르면 고용주를 위해 12개월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일을 다 쓰지 않고 실직하거나 고용 종료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현금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8월 09일 제39064/CTHN-TTHT 호 OL)



간접세 (“VAT”)

지침문서

투자단계에 발생한 VAT에 대한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VAT 환급

기업이 운영 이미 시작한 투자 프로젝트의 공장,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매입 VAT를 발생하는 경우 투자단계의 공제 가능한 VAT 및 사업활동의 VAT를 제 01/GTGT 호 양식으로 신고하며 제 25/2018/TT-BTC 호 시행규칙, 제 2 조에 의한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수출생산에 대해 VAT 환급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재무부의 제 26/2015/TT-BTC 호 시행규칙의 제 10.1 조 및 2016년 10월 28 일 제 173/2016/TT-BTC 호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된 VAT 공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Long An 세무국의 2022년 8월 22일 제 2861/CTLAN-TTHT 호 OL)

지침 문서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공제방식으로 VAT 신고하는 기업이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VAT 신고, 환급을 진행한다:

- 기업이 본사와 다른 지방에 위치한 지점을 설립하지만 그 지방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의 관리권을 지점에 위임하지 않는다. 지점이 종속적 회계를 수행하고 은행계좌, 회계장부, 인보이스 및 프로젝트의 기타 증빙서류를 유지하지 않으면 회사가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별도 VAT 신고서 및 환급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현지 세무국에 제출한다
- 동시에,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매입 VAT를 현재 생산영업 활동의 매출 VAT와 상계해서 신고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상계된 VAT가 동기에 생산영업활동의 납부 VAT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상계 후 신규 프로젝트의 잔여 매입 VAT가 3억동 이상으로 남아 있으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환급될 수 있다.

- 회사가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지점에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관리권을 위임하고 지점이 회계법에 따라 적법한 인감, 회계장부 및 은행 계좌를 보유할 경우 지점은 현지 관리세무국에 VAT 신고서 및 환급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회사가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절차를 완료한 후 재무부의 제 130/2016/TT-BTC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발생한 VAT 금액, 환급된 VAT 금액 및 미환급 VAT 금액을 신고납부등을 위해 신설지점에 인계해야 한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9월 7일 제 2697/CTBNI-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 문서

한개의 조정 인보이스가 오류가 있는 여러 전자 인보이스를 수정 불가능함

기업이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 제123/2020/ND-CP 시행령 및 재무부의 2021년 9월 17일 제78/2021/TT-BTC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 인보이스를 적용하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때, 회사 (판매자)와 고객 (구매자)은 인보이스 발행 및 결제하기 위해 임시가격을 상의한다. 그후에 양측은 조정 인보이스를 통해 판매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인보이스 발행은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회사와 구매자는 오류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오류가 있는 인보이스를 수정하기 위해 조정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한다.

조정 전자 인보이스에 "인보이스 양식...번호... 날짜...에 대한 조정"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금액의 증가 (양) 및 감소 (음)에 대한 조정 인보이스는 실제 조정과 일치해야 하며, 한개의 전자 인보이스는 오류가 있는 한개의 전자 인보이스에 대해서만 수정 가능하다. (즉, 한개의 조정 인보이스가 오류가 있는 여러 전자 인보이스를 수정 불가능하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조정 인보이스를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한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9월 8일 제/No. 2704/CTBNI-TTHT호 OL)

통관후 조사결론에 따른 추가 납부 VAT에 대한 공제신고

통관후 조사결론에 따라 회사가 VAT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된 VAT 금액은 과세기간의 납부 VAT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전액 공제될 수 있다. 재무부의 제 219/2013/TT-BTC 호 시행규칙 제 14 조; 국회의 2019년 06월 13일 제38/2019/QH14 호 조세관리법 제47조; 2020년 10월 19일 정부의 제126/2020/ND-CP 시행령의 제7.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고: 세금 포탈이나 탈세에 대한 벌금은 VAT 및 CIT 목적상 공제되지 않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8월 15일 제40071/CTHN-TTHT호 OL)

간접세 ("VAT")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문서

부동산 활동 양도를 위한 VAT 과세 가격 결정

기업이 단체 및 개인으로 부터 토지사용권을 양도 받는 경우 VAT과세 가격은 양도가격에서 VAT계산을 위해 공제 가능한 토지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VAT 계산을 위해 공제 가능한 토지가격은 제 219/2013/TT-BTC 호 시행규칙, 제7.10조 제a.4항 및 제209/2013/ND-CP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의 가치 (있는 경우)를 포함한 토지 이용권 양도 당시의 토지가격입니다. 회사가 VAT 부과되지 않는 공제 가능한 토지이용권 가액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매입VAT를 신고, 공제할 수 없다.

공제 가능한 토지가격이 기반시설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으면 사업장이 기반시설의 매입 VAT를 신고하고 공제할 수 있다.

2022년 9월 12일부터 회사가 단체 및 개인으로 부터 토지사용권을 양도 받은 경우 VAT를 계산을 위해 공제가능한 토지가액이 상기 제209/2013/ND-CP호 시행령의 제4.3조를 수정보완하는 제 49/2022/ND-CP호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 사용권 양도 당시에 기반시설 가치를 포함되지 않은 토지가격이다. 사업장은 기반시설의 VAT를 신고 및 공제할 수 있다 (있는 경우). 양도 받을 당시에 토지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VAT 계산을 위해 공제가능한 토지가격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도시 또는 시군 인민위원회에 의해 정하는 가격이다.

(Hanoi 세무국의 2022년 9월 6일 제43725/CTHN-TTHT 호 OL)

규정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조정 인보이스

회사가 재무부의 2021년 9월 17일 제78/2021/TT-BTC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무부의 2011년 3월 14일 제32/2011/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발행된 전자 인보이스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회사가 잘못 발행된 인보이스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회사가 제32/2011/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오류가 있는 인보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고 대신에, 오류가 있는 인보이스를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송장을 발행하면 2021년 9월 17일 재무부의 제 78/2021/TT-BTC호 시행규칙의 제12.6조의 지침에 맞지않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9월 6일 제2685/CTBNI-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러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PIT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러 파견된 경우 원천징수 PIT 세율은 노동계약 또는 인사발령서에 기술된 베트남에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재무부의 2013년 8월 15일 제111/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 25조 1항 b.3항의 규정에 따라 누진세율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으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경우) 또는 단일세율 (과세연도에 183일 미만으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경우)로 세금을 임시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인 개인이 제 111/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1조에 따라 역년 기준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첫 과세연도는 제38/2019/QH14호 조세행정법 제3조, 11항 및 제44조 2항 b점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7월 19일 제35195/CTHN-TTHT호 OL)

부동산 증여 위임에 대한 PIT

부동산 소유자가 자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개인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받은 자가 위임계약으로 인한 소득이나 이익이 없음), 증여 받은 부동산으로 인한 자매의 소득이 재무부 의 제111/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 3조 d항에 따라 PIT 면제된 대상이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8월 10일 제39281/CTHN-TTHT)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자산 청산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혼합 방법 (Hybrid method)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자산 청산 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이 소득은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라 CIT 과세 대상이다.

자산 청산 활동에 대한 과세소득 및 적용 CIT세율 (%)이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8월 18일 제40743/CTHN-TTHT호 OL)

기존 기술 플랫폼상 디지털 유틸리티 사용권 제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 회사와의 체결한 계약 또는 협의로 인해 베트남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이 소득이 제103/2014/TT-BTC호 시행령에 따라 FCWT 과세대상이다.

베트남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계약자가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76조, 77조, 78조, 79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회사가 제103/2014/TT-BTC호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계약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 **CIT:** 2014년 8월 6일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라 외국인계약자가 기존 기술 플랫폼상 디지털 유틸리티 사용권 제공으로 인해 얻은 소득은 로열티 소득으로 간주되며 과세소득에 대하여 CIT 세율 10%이 적용된다.

- **VAT:** 기존 기술 플랫폼상 디지털 유틸리티 사용권 제공 (정부의 2007년 5월 3일 제71/2007/ND-CP에 따른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아니며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이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으로 인해 얻은 소득은 VAT 과세되며 과세 소득에 대한 VAT 세율 5%이 적용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8월 30일 제42786/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 가공업체 (“EPE”)는 일반기업 (“NON-EPE”)으로 전환할 때 세금 정책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EPE는 Non- EPE로 전환하기 전에 새롭게 관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초과 납부한 수입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고정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 기업이 전환한 후에도 투자법과 수출입 관세법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 전환전에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수입품에 대한 면세 인센티브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EPE는 고정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면세 수입품의 사용목적을 변경 신고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규정에 따라 면세혜택을 받은 업체로 양도하는 통해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기업이 전환 후에 이전에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면세된 Master list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 전환 절차를 완료한 후 기업은 규정에 따라 면세 수입품 사용에 대한 연간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 특히, 전환 시점 이후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수입품의 경우 기업이 수입전 Master list를 통보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2년 8월 9일 제3292/TCHQ-TXNK호 OL)

내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제 방식으로 VAT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내 기업이 수출 가공 기업(EPE) 및 비관세 지역 (수출가공시설 포함)에 판매한 경우:

- **내국 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신고자는 VAT 인보이스 대신에 창고출고표와 내부 운송전표 (사본)를 관세 데이터 전자처리시스템을 통해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 **내국 수입 절차를 수행할 때:** 신고자가 VAT 인보이스 포함 관세 서류 사본을 관세 데이터 전자처리시스템을 통해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재무부의 2022년 8월 12일 제8042/BTC-TCHQ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 문서

사용 목적 변경에 따라 수출 생산·가공을 위한 수입 원자재 재수출

- 수출생산을 위해 수입되거나 수출가공 계약을 위해 자체 수입된 원자재, 공급품 및 부품은 수입 관세 및 VAT가 면제된다. 해외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재수출을 통해 사용 목적을 변경하면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새롭게 관세 (모드 A42) 신고하고 를 수입세, 연체이자 및 과태료를 (있는 경우) 충분히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관세 신고에 대한 절차를 완료한 후 납세자는 관세총국의 2021년 8월 16일 제 4032/TCHQ-GSQL 호 OL 에 따라 수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출자가 최초 수입자 또는 최초 수입자로 부터 수출 위탁받은 단체이고 상품은 수출 면제 또는 수입 관세 환급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전자 신고서상 "비고" 또는 종이 신고서상 "기타비고" 항목에 관세 모드 B13로 신고한다. 또한 관세총국의 2021년 8월 16일 4032/TCHQ-GSQL의 지침에 따라 신고외에 이전에 모드 B13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서상 이전에 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 번호 (E31 또는 E21) 및 "미사용 또는 미가공 수입품"라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사용목적 변경신고서 A42의 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Bien Hoa 관세지국의 2022년 8월 11일제1220/HQBH-NV호 OL)

FDI에 의해 수입된 원자재 청산

외국인직접투자기업("FDI 기업")이 소유한 수입 원자재 및 물품은 가공되었으면 수출 형태로 청산될 수 있다.

수출 신고서의 관세 모드는 수출 활동의 성격 및 2021년 5월 18일 제1357/QD-TCHQ호 결정서와 관세 모드에 대한 관세총국의 지침 문서를 기반으로 적용된다.

다만 FDI 기업이 상품을 수입한 후에 해당 상품을 (원래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이 활동은 재수출 활동을 위한 임시 수입으로 간주되고 제69/2018/NĐ-CP호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FDI 기업이 재수출 활동을 위한 임시 수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관세총국의2022년 8월 22일 제1214/GSQL-GQ2호 OL)

무역 및 관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입품에 대한 로열티비 추가 신고

수입품의 로열티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다만 수입후 물품의 판매수익을 근거하여야 확정될 수 있거나 상품 매매계약서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타 이유 또는 로열티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가 있어서 로열티비가 수입신고시점에 확정될 수 없는 경우 관세 신고자가 아래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 관세 신고서에 로열티 수수료를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하게 신고한다.
- 통관 후 추가신고서에 확정된 로열티 수수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 신고하여 규정에 따라 충분히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 수수료를 확정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05일이다.

수입자는 관련 서류, 문서에 근거하여 조정된 로열티 수수료를 확정하는 시점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로열티비는 최초 신고서의 등록시점에 신고된 과세가격에 합산하여 관세당국에 신고 및 납부된다.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물품 수량에 따라 로열티 수수료를 여러번으로 지급된 경우 (분기별 지급) 회사는 수입신고와 관련 로열티비를 완전히 할당될 때까지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8월 23일 제3489/TCHQ-TXNK호 OL)

수입 원자재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지만 규정에 세금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 및 연체이자 부과

관세당국 또는 기타 당국이 납세자를 조사하고 나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없이 수출 생산을 위한 수입 원자재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내수 소비로 변경한 것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는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 최초 관세신고에 따라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 및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연체이자 계산시점은 최초 신고서의 납세 기한 만료일부부터 계산된다.

(관세총국의 2022년 9월 6일 제3674/TCHQ-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